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33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임직원	甲

2. 조치내용

□ 임직원에 대한 조치

○ 甲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면직 상당) 및 과태료 25백만원 부과

- 조치사유 :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

3. 조치사유

가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(투자권유자문인력)은 ①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②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③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해야 하며, ④계좌 개설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,

○ ㈜아이엠증권(이하 “회사”) 前 A센터 임직원 甲(투자권유자문인력)은 준법감시부서에서 실시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*을 총 12회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,

* 임직원 내부통제 교육으로 ‘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’에 관한 사항을 포함

○ 20xx.xx.xx. ~ 20xx.xx.xx. 기간 중 ①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②소속 회사의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의 3개 계좌를

이용하여 매매하였고, 소속 회사에 ③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④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4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」 제63조 제1항, 제422조 제2항, 제424조 제3항, 제449조 제2항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4조 제2항, 제390조 및 <별표 22>